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01
----------	-------

제출년월일 : 2025. 8. 1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내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안 제5조제3항)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12조제1항)
- 다. 조문 제목 변경 및 조항 신설(안 제9조)
- 라. 조문 삭제(안 제10조)
- 마. 조문 내용 일부 수정(안 제29조)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 바.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5. 6. 18. ~ 2025. 7. 8. (20일간)
- 사. 기타 참고사항
 - 1) 현행조례 : 【붙임 5】
 - 2)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위원은”과 “다음” 사이에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를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권리과
입 안 자	아동권리과장	고 태 균
	아동보호팀장	강 유 선
	담 당 자 (연락처)	황 선 (481-2298)

【 붙임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③ 위원은 <u>다음</u>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p> <p>제9조(회의)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u>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u> 이 된다.</p> <p>제29조(시설기준 등) 아동보호전</p>	<p>제5조(구성) ③ ---<u>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u> <u>다음</u>----- ----- -----.</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u><삭 제></u></p> <p>제12조(간사) ①----- -----<u>업무담당 팀장</u>-----.</p> <p>제29조(시설기준 등) -----</p>

현행	개정안
<p>문기관의 시설기준 및 상담사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u>아동복지법</u> <u>시행령 제42조</u>에 따른다.</p>	<p>----- ----- <u>법 시행령 제42조</u>-----.</p>